

■ 학생 인권과 관련된 상위 법령 및 근거 모음 ■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체벌	<p>[교육기본법]</p> <p>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p> <p>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p> <p>[유엔아동권리협약]</p> <p>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p> <p>(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p> <p>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p>
	<p>【해 석】</p> <p>◎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8은 처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함.</p> <p>- 동 협약 제37조는 당사국들이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제19조에서 보완되고 부연되었는데, 동조는 당사국들에게 아동이 부모,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함.</p> <p>- 또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아동에 대한 여하한 수준의 폭력의 합법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고,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형태의 처벌은 폭력의 형태이며, 국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함.</p> <p>- 동 협약 제28조제2항에 대하여 “동조는 학교규율을 언급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에게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함.</p>
	<p>【관 례】</p> <p>◎ 현재 2006.07.27, 2005 헌마1189</p> <p>- 헌법재판소는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p>

	<p>-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체벌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p> <p>-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체벌의 불가피성,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제시하였음.</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 결정(10진정313700)</p> <p>- 체벌은 학생들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당사자인 학생들은 체벌에 대한 불안감, 우울증, 학교 강박증, 적개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으로 양성될 위험이 크므로, 교육공동체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체벌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멍 및 부종 등의 후유증을 초래하는 것은 체벌의 정도 면에서도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임. - 관련 결정 : 진인2659, 2660, 2793</p>
언어 폭력	<p>[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p> <p>[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p> <p>[국가공무원법]</p> <p>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 결정(10진정 313700)</p> <p>- 피해자의 귀 등을 잡아당긴 행위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돼지처럼 쿵쿵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적 지도방법을 벗어난 행위이며, …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진정인이 공무원의 친절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에 반하여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 바,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p>
차별 금지	<p>[교육기본법]</p> <p>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아동 복지법] 제3조(기본이념)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p> <p>제4조(책임)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국가 인권위원회 법] 제2조(정의)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p>
	<p>【관례】</p> <p>◎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구체화한 것임.</p> <p>◎ 헌법 재판소는 평등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규정은 기회 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고 함(헌재 1989.01.25, 89헌가7).</p>
<p>성적에 의한 차별</p>	<p>[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p> <p>[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p> <p>[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 결정례 08진차 158</p> <p>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전용실의 입실자격을 성적 우수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p>

	<p>라고 판단된다.</p> <p>◎ 국가인권위 결정례 09진차 1194</p> <p>- 피진정인이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학급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p>
성별에 의한 차별	<p>[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p> <p>[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p> <p>[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p>
	<p>【판례】</p> <p>◎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p> <p>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09진차535</p> <p>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다.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업중단→취업의 어려움→빈곤→아동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 또한 될 수 없다. 따라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휴학 또는 자퇴를 종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결정했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p>
소수자 차별	<p>[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p> <p>[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p> <p>[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7조 1</p> <p>[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7조</p> <p>◎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2003년</p> <p>- 당사국들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동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혹은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것(제2조)을</p>

	<p>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근거에는 청소년들의 성적 지향과 건강 상태 (HIV/AIDS와 정신보건상태를 포함)도 포함된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p> <p>◎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20, 2009년</p> <p>- 당사국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 때문에 ... 이 규약 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성별 정체성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768600 결정</p> <p>- B형 간염은 기숙사 생활, 군 내무반 등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고등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p> <p>◎ 국가인권위원회 2011.2.16.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p> <p>- 적지 않은 이주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한국학생들로부터 무시와 소외, 발음 놀림, 피부색 놀림, 모국 비하 등의 차별을 당하고, 헐박, 소지품 강탈, 구타 등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p> <p>구체적인 예로 이주아동은 ‘너희 나라에는 이런 것 없지’ 등의 모국 비하, ‘너희 나라로 돌아가’, ‘신고 하겠다’는 등의 헐박, 무시와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p>
<p>자율 학습/ 방과 후 학교</p>	<p>◎ 국가인권위 결정례 09진인 3240</p> <p>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중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에 참여시킬 경우 학생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일탈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학습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기숙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에 대한 자율학습 실시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자율학습 참여를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 외적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및 28조의 규정에 어긋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p>

<p>휴식권</p>	<p>【관례】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자 2008 헌마 635 결정 헌법재판소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면시간을 확보하려는 등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p>
<p>두발 복장</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동 시행령 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훈육의 지도방법을 학칙으로 정함 -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7호~제9호)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반영 의무화 ※ 제8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9호 학칙개정절차 - 제7호~제9호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의 제.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학교규칙으로 정함(제9호 학칙개정절차) 【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2005.6.27.자 05진차 204,145,119(병합)결정 <결정요지> -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주체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이발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에 대해 일정 제도의 제한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해야 하므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상 곱슬머리의 여학생 등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p>
<p>일기장 검사</p>	<p>[국가인권위원회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관련 의견]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 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p>

휴대폰 사용 금지	<p>【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0 진정 298600</p> <p>-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 기관의 「학칙」을 위임받아 제정된 「학생 휴대전화사용 관리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p> <p>- 피진정 기관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에 따른 경우 피진정 기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방과 후부터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실 주변 및 기숙사에 총 6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해 두었다고 하지만, 피진정 기관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가 361명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6대의 공중전화로 수시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중전화가 설치된 장소 또한 매우 개방된 곳이어서 학생들이 부모 또는 친구들과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급하게 휴대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 생활지도부와 자율학습 교사에게 요청하여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를 하는 학부모 등이나 전화를 받는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알려지게 됨으로써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p>
소지품 압수	<p>[국가인권위원회 권고]</p> <p>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거가 없는 휴대폰 수거 및 열람하고 소지를 금지케 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권고</p>
CCTV	<p>‘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5조 각 호의 장소를 제외한 장소에 대해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음.</p> <p>[개인정보보호법]</p> <p>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 종교 과목 편성 및 종교 활동 관련 교과부 지침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2009-41호)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2008.04.15)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에 종교 과목 복수 편성과 정규교과 외 종교 활동에 학생 자율 참여 원칙을 포함하여 안내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종교의 자유	<p>【판례】</p> <p>◎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p> <p>-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종교 행위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p> <p>-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p> <p>-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 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p>
표현의 자유	<p>【판례】</p> <p>◎ 헌법재판소 결정(2009.9.24.자 2008헌가25 결정)</p> <p>-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우선, 국가에</p>

	<p>대한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주체, 주관, 진행, 참가 등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실현 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p> <p>-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 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국민 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p>
<p>정책 결정 참여</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p> <p>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징계 절차</p>	<p>[초·중등교육법]</p> <p>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p>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p>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p> <p>④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제1항 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의 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p>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p>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전학 권고</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원회 2008.4.3자 07진인2330 결정</p> <p>피진정인의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00도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및 00교육감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p>
<p>별점에 의한 퇴학</p>	<p>【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2008. 4. 3. 자 07진인 2330</p> <p>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피진정인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위 학교와 같이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기준의 절점을 초과한 학생들에 대해 퇴학예정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00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p> <p>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인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함.</p>
<p>각서 작성</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06진인3067</p> <p>-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특별교육 이수에 처하면서 진정인의 학부모로부터 차후 교칙을 한 건이라도 위반할 시에는 학생선도협의회 협의 없이 퇴학 처분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 실제로 진정인이 교칙을 위반하자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퇴학 처분한 바, 이는 규정에 없는 임의의 절차로 퇴학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위와 같은 징계절차 위반은 학생 징계 시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 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바, 피진정인의 주장을 볼 때 퇴학 처분 시 위와 같은 임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00고등학교의 관행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 할 것과 위와 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학생 징계 재심의</p>	<p>◎ 학교폭력 가이드 북</p> <p>-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통보한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수정 처리 또는 거부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수정 처리 또는 거부가 가능하다.</p> <p>-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자치위원회가 그 심의과정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친 이상, 당해조치를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자치위원회는 당해사항에 대해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소수자 인권</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원회 2010.12.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p> <p>- 학습권 보호는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과 학습권 보호에 대한 정부나 교육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함.</p> <p>◎ 국가인권위원회 2007.12.13.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p> <p>-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의 기준 마련 등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부득이한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대회 개최에 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한 대회 개최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함.</p> <p>◎ 국가인권위원회 2011.2.16.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p> <p>-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시스템과 전, 입학과정 및 학교생활에서 이주아동과 학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국어 정보 제공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이주아동의 전,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행정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p>